

POSCO DX ESG Policy Book  
포스코DX ESG 정책집

# ESG POLICY BOOK

posco  
포스코DX

# POSCO DX ESG Policy Book

포스코DX ESG 정책집

## Contents

---

### Environment

환경 정책	03
녹색구매 정책	05

---

### Social

안전보건경영 정책	06
인권경영 정책	07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10
공급망 정책	12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14

---

### Governance

조세 정책	16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18
반부패 준수 지침	19
윤리규범	22

## Environment

# 환경 정책

## Environmental Policy

개정이력 | 2024.04.01 개정

### 목적

본 정책은 지속가능경영 및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포스코DX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환경보호 및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DX에 적용된다. 포스코DX와 거래하는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기본 원칙

#### ①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환경·에너지 관련 국제 협약 및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친환경 생산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 ②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자체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며 성과를 자체 평가한다.
- 화석연료 및 화석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 복원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녹지·산림·습지·해양 등 지구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확대 및 신규 설치 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철수 시 재조림, 녹지화 등 기존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

#### ④ 원부자재 및 용수

- 완제품의 자원사용량을 고려하고, 사용하는 자재를 재생가능한 원료, 불순물이 적은 원료 등의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거나, 절수기 설치와 같이 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신규 설비 혹은 청정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폐기물 및 폐수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폐수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 처리 또는 정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⑥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출, 누출 등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이용 및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실행 방안

### ①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회사의 사업활동에 특유한 환경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관리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환경 관련 구체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이사회와 경영진은 환경관리시스템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관리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진을 두어 인적·물적으로 지원한다.
- 환경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각 회사의 사업 실정에 맞게 기존 정책에 환경 관련 요소를 포함하고, 필요시 생물 다양성·산림·습지·기후 리스크 등 세부 환경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책·지침·사규를 수립하여 준수한다.
- 협력업체, 공급사,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소통하고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임직원들이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관리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관련 전환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를 전사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 및 경영 전략에 통합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전략 평가는 이사회·경영진에 적절히 보고되도록 한다.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다.
- TCFD 등 기후변화 관련 인증·공시 프레임워크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는 방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현황을 합리적 범위에서 공개한다.

### ③ 생산 및 사업장 환경 관리

- KPI 등 목표 관리, 교육/훈련, 지침 수립 및 관리, 내부 심사 등의 프로세스 절차를 통해 생산 및 사업장의 환경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친환경 생산공정과 최적 방지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 및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생산시설·사업장 특성에 맞춰 환경경영 매뉴얼을 제정·운영하며, 설비 가동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사업장 개설·확대 및 철수 시에는 생태계 및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철저히 리스크를 평가하고 순 환경영향 제로를 위해 노력한다. 산림 및 습지를 파괴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산림·습지 복원 활동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시한다.

### ④ 제품 및 서비스 개발·유통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 속 위기와 기회요인을 인지하고, 친환경 제품 및 부산물의 공급 확대, 운송·물류 과정에서의 환경 리스크 평가를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 및 공급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저탄소·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 ⑤ 공급망 관리, 업체 선정 및 평가

- 외부 업체(공급·계약·서비스 제공) 선정 시 환경관리 수준 등을 평가 항목을 반영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 공급사·협력업체가 높은 수준의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체적 공급사 환경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 자재·비품의 조달 시 녹색구매 정책을 준수한다.

### ⑥ 신규 프로젝트 및 인수·합병

- 신규 사업/투자 검토과정에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의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 인수·합병 검토 시 사전 실사를 통해 환경 리스크를 파악하여 사전 대응한다.

## Environment

# 녹색구매 정책

## Green Procurement Policy

개정이력 | 2024.04.01 제정

###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DX가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구매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DX 및 그 임직원에 해당한다. 포스코DX의 전 사업장, 해외법인 및 그 임직원과 포스코DX와 각종 거래 관계를 갖는 고객,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용어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녹색구매'란 원부자재·집기비품 등 사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급·유통·후처리 과정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구매 계약 및 공급망 관리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구매 활동을 말한다.
-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제품 내지 아래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인증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 저탄소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우수재활용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정하고 공고한 재활용제품

### 기본 원칙

- 원부자재 조달, 공정, 운영, 물류 유통, 폐기물 처리 등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녹색구매 활동을 실천한다.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경영 실천을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에서의 자재 구매 활동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 등 소모성 자재를 비롯하여 전사적 구매 업무에서 녹색구매를 실천한다.

### 실행 방안

#### ① 녹색구매 적극 권장

-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자재부터 기업용 소모품, 비품, 토목, 건축, 전기, 화학 설비 및 서비스 등 구매 절차에 녹색제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시장에 관련 인증 제도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이유 등으로 녹색제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활용 원재료 사용 여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공정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등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한다.

#### ② 녹색구매 시스템 구축

- 효과적인 녹색구매 실천 및 녹색구매 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녹색구매 현황 모니터링, 녹색제품 및 녹색 공급처의 발굴 및 도입, 녹색구매 실적 평가 및 중장기 목표 수립 등 녹색구매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녹색구매 실적 및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 ③ 공급망 내 녹색구매 장려

-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력업체, 공급사 등 거래 상대방에도 녹색구매 실천을 장려하며, 구체적으로 녹색구매 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협력업체 선정 시 고려한다.

## Social

# 안전보건경영 정책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olicy

개정이력 | 2024.04.01 개정

###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DX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내외 법규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편익과 안정에 최적화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DX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되고, 포스코DX와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기본 원칙

#### ① 사업장

- 사업장의 모든 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 순위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개선하며, 성과 판단을 위한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유해·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장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품 및 서비스

-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제품 및 서비스 안전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슈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파악한 이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이슈 및 목표를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 ③ 임직원 건강 증진

-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하며, 정신 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 및 관리하고, 필요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한다.

### 실행 방안

-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이사회와 경영진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다.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임직원들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 비상상황 발생 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다.

## Social

# 인권경영 정책

## Human Rights Management Policy

개정이력 | 2024.04.01 제정

###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DX가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DX에 속한 국내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당사와 각종 거래 관계를 갖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기본 원칙

#### 1 기본 방침

- UN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존중하여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에는 생명과 신체적 안전,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가정생활과 사생활의 자유, 식량과 물, 고문, 노예제도 또는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품위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차별금지 등이 포함됨을 인정한다.
- 이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이를 위해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임직원은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장사항을 준수한다.
  - ①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한다.
  - ② 현지국의 상반되는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③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중요하게 다룬다.

#### 2 주요 인권 이슈

- 다음과 같은 인권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를 전사적 차원에서 관리하며 인권존중 책임을 수행한다.

##### ① 차별금지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으며, 직무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성별 및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동일임금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인신매매를 포함한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액 예정을 금지하고, 금전대차를 이유로 근로자의 신분을 구속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추가적인 강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미성년자 노동조건 및 최저 노동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노동기본권에 준하여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기본 원칙

④ 산업안전 보장

모든 종류의 재해와 작업 관련 질병은 예방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전사적인 보건안전 정책을 마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방지함으로써 인간 존중 직장문화를 구현한다.

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및 아동인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사의 인권 리스크를 관리한다. 또한 협력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⑦ 부패 및 뇌물방지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UN부패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⑧ 환경권 보장

화석 연·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수행한다.

⑨ 지역주민 인권 보호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그 지역에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식량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 보전 및 생물의 다양성 문제도 함께 고려한다.

⑩ 고객 인권 보호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여 고객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한다.

실행 방안

1 인권경영 거버넌스

인권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방향 설정 및 인권경영 이행 모니터링은 인권경영 전담 부서에서 수행한다. 인권경영 전담 부서는 인권 교육, 정보 공개, 인권 실사, 피해자 구제 등을 수행하며, 중요 이슈 발생 시에는 이사회 산하의 전문위원회인 ESG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다.

2 인권실사

가) 핵심 고려요소

포스코DX는 인권경영 전담 부서를 통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예방 및 완화하고, 인권경영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실사를 실시한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영향 식별 및 평가,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대응 활동에 관한 기록,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인권실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을 포함시킨다.
- ② 사업장의 소재와 규모, 인권 관련 위험성, 사업의 특성과 내용, 현지국의 정치·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 ③ 회사의 활동과 사업운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권에 미치는 위험도 점차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실행 방안**

**나) 실시 방법**

국내외 사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다음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한다.

- ① 국내외 주요 사업장에서 인권 관련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에는 인권실사를 통해 현상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② 실사는 내부 전문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③ 실사는 OECD, UNGP, UNGC, ILO 등 국제 인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산업 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실시한다.
- ④ 경우에 따라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In-depth Interview)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여, 인권실사를 통해 식별된 인권 리스크와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세부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한다.
- ⑤ 실사 시에는 잠재적·실질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파악된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 방지·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미 발생한 실질적 영향은 구제(Remedy) 및 해결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다) 대응 및 후속조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완화를 위한 인권 실사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후속조치를 취한다.

- ① 내부 대응체계 확립
  - i.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부서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 ii. 내부 의사결정, 예산 할당, 감시 절차를 이러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
  - iii. 인권실사를 통해 도출한 문제를 유관부서에 정확히 이해시키고 중요사안으로 관리하여 대응한다.
- ② 후속조치 및 구제
  - i.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이의 방지,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 ii. 최선의 정책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도 예견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체와 협력하여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iii. 직접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정적 영향이 다른 주체(예: 공급사)와의 관계에서 기업의 운영 및 서비스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직접적 책임은 없으나 소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 iv. 회사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주체와 협력하여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 v. 효과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한다.

**라)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경우 책임감을 갖고 소통한다.

- ① 영향을 받는 집단, 개인과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하여 의사소통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용이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 공식보고서 발행, 온라인 채널 활용(예: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 등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를 고려한다.
- ② 공식 보고서 발행 시에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포함하며, 보고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고려한다.
- ③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인권영향과 관련하여 회사가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마) 내재화 및 제도 개선**

인권 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조직문화 내재화,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 ① 전 임직원에게 대한 공감대 형성 교육, 인권경영 관련 규범에 관한 교육, 성공 및 실패 사례 공유 등 인권경영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 ② 전문가의 자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제도 실행을 통한 개선점 발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제도 개선을 수행한다.

**③ 고충처리제도**

- 제기된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이해관계자를 위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 윤리신고센터, 사이버 신고 등 기존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자,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조사 신청 및 이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고충처리제도는 회사의 인권준중 책임과 관련해 다음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이들은 인권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정도경영그룹에 직접방문, 우편, 전화, E-mail 등의 방법으로 신고,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 수렴 및 피해자 구제를 조기에 직접 다루어 인권 피해의 확산을 막는다.
  - ③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 Social

#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Policy

개정이력 | 2024.04.01 제정

###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DX 전 임직원에게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개선하고, 직장 내 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을 방지하여, 임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DX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포스코DX의 전 사업장, 출자법인 및 그 임직원과 포스코DX와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기본 원칙

#### ① 다양성 및 포용성

다양성은 문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사회적 경제적 지위, 능력 등 임직원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포용성은 모든 임직원이 조직에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조직 구성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 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포용적인 근무환경을 유지한다.
- ② 모든 임직원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③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조직 간의 벽을 없애고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 ⑤ 임직원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킹 그룹을 마련한다.
- ⑥ 특정 임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를 이유로 그들을 회사에서 소외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 ⑦ 다양한 세대가 각기 다른 능력을 제공하면서 공존하고, 다양한 배경, 국적, 인종의 임직원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곳을 인식한다.
- ⑧ 결혼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등 가족 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임직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⑨ 능력에 기반한 승진 제도를 도입한다.
- ⑩ 임직원 채용, 관리, 교육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사용되는 경우, 특정 그룹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② 형평성

형평성은 임직원이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 채용, 교육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준수한다.

- ①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 ② 회사, 계열사, 공급·협력업체 내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 특정 성별이 적은 부서의 경우, 합리적 수준의 성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마련하여 실천한다.
  -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분석하여 매년 공개한다.
  -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인원의 성비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여성 임직원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직장 내 개인의 성장이 성별을 이유로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동일한 업무, 가치가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학력에 따른 편견 없이 타인을 대우한다.

## 기본 원칙

### ③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의 행위(유사한 행위 포함)는 금지된다.

- ① 신체적인 괴롭힘
- ② 정신적인 괴롭힘
- ③ 업무적인 괴롭힘
- ④ 개인적인 괴롭힘

### ④ 성희롱 금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실행 방안

- ①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개선하고 직장 내 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 ② 경영진 또는 이사회는 본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상담,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특히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 및 신고 센터를 전담조직으로 운영한다.
- ③ 누구든지 이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전담조직에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
- ④ 전담조직은 본 정책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부서 전환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⑤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Social

## 공급망 정책

## Supply Chain Policy

개정이력 | 2024.04.01 개정

##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DX가 공급망 및 협력사들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강건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DX에게 적용된다. 포스코DX는 거래하는 공급사 및 협력사(이하 통칭하여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더 나아가 포스코DX는 협력사가 자신들의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

## 협력사 행동규범

## 1 인권

협력사는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등에 따라 불법적 미성년자 노동, 인신매매, 강제 노동 등을 용인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자의 인권, 근로시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 2 환경

협력사는 환경관련 규제와 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한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협력사는 화석연료 및 화석원료의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3 보건·안전

협력사는 전사적인 보건안전 정책을 마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이 재해와 작업 관련 질병으로부터 보호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협력사는 제품 생산에 있어 소비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4 부패방지

협력사는 모든 유형의 부패행위, 금품요구 및 부정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용인해서도 안 된다. 협력사는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본에 철저히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한다.

## 5 공정거래

협력사는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해야 한다.

## 6 자금세탁 및 탈세 등 방지

협력사는 국내외적으로 불법자금의 세탁, 탈세 및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의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을 준수한다.

## 7 이해상충 방지

협력사는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회피해야 하고, 회사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모든 기밀 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협력사 행동규범**

**8 내부 신고 제도**

협력사는 근로자들이 비윤리적 행위나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러한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9 임금**

협력사는 최저임금, 급여, 잔업수당, 급여 공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임금 관련 법률들을 준수한다.

**실행 방안**

**1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실사**

- 협력사들이 본 정책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해 공급망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협력사 선정 시, 협력사가 본 정책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와 계약하는 경우, 협력사가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협력사가 그들의 협력사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인권, 환경, 제품 안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 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망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공급망 실사에는 공급망에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 영향의 식별과 평가,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개선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 실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와의 소통, 이해관계자가 고충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실사의 대상이 되는 공급망의 범위는 포스코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 또는 2차 이상 협력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실사를 통해 협력사의 본 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개선 및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협력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리스크 개선노력이 미흡하여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2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관계 구축**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 협력사의 권리(지식재산권, 물적 권리 등)를 존중하며, 협력사와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협력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력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협력사에 대한 대금결제 환경 개선,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협력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Social

#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 Stakeholder Engagement Policy

개정이력 | 2024.04.01 제정

### 목적

포스코DX는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여기고 있다. 본 정책은 공존·공생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소통해 나가기 위한 원칙과 실행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DX의 국내외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당사와 각종 거래 관계를 갖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기본 원칙

#### ① 이해관계자의 정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활동, 제품, 서비스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에는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및 시민단체, 국내외 투자자 등 다양한 집단이 포함될 수 있다.

#### ②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

진실, 공정, 정직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로 인식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주기적 소통을 통해 기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사회책임경영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지역사회 존중 및 참여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69호 또는 유엔 선주민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선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선주민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실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지역사회 발전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실행 방안

### ① 이해관계자의 식별, 참여 및 소통 절차 마련

-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식별하고, 그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여기에 의사소통 채널의 운영 주체와 주기 및 방식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② 지역사회 보호 및 참여 절차 마련

- 기업활동이 지역 주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에게 사업수행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이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기업활동이 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보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 기업활동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의 하에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

-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 ④ 고충처리제도

- 기업활동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윤리신고센터, 사이버 신고 등 기존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자,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조사 신청 및 이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Governance

# 조세 정책

## Tax Policy

개정이력 | 2024.04.01 제정

###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DX가 준수해야 할 조세 정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조세 법령을 준수하며 과세당국과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DX에게 적용되며, 세무 관련 임직원은 본 조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포스코DX 전 사업장, 해외법인 및 포스코DX와 거래하는 고객, 협력사 및 계약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기본 원칙

#### ① 조세 법령 준수

· 포스코DX는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세법과 그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원칙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납부할 세액 산정 및 적기 납부 등 각 국가에서 부여되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② 과세 당국과의 투명한 상호협력적 관계 구축

· 포스코DX는 각 국가의 과세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구축하고, 책임을 다하는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세신고 및 납세 의무를 성실히 임하며, 제도 및 유관 규정·절차의 발전적 개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과세당국과 건설적이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③ 국제 거래상 의무 이행

· 포스코DX는 국제 거래상의 세무 법규를 준수하고,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세 회피 거래 및 조세 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 이전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OECD TP Guideline과 해당 국가의 법규에 부합하는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근거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며, 필요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증 받는다.

#### ④ 지역사회 발전 기여

· 포스코DX는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철저한 세무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과세는 경정청구 및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세불복을 진행한다. 또한 합법적 절세재원에 따른 성장이익을 사회와 공유한다.

#### ⑤ 세무 리스크 최소화

· 포스코DX는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투자 등 경영전반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 전 세무 이슈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

## 실행 방안

### ① 조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 대내외 경영환경, 사업 구조 및 거래 분석을 모니터링하는 사내 세무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리스크 평가 검토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 모든 세무 신고 납부기한을 준수하며, 조세와 관련된 자료를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 ② 이사회 및 세무담당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 이사회는 본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주체가 되며, 세무담당 임직원은 포스코DX의 조세 정책에 따라 각 국가의 세무 법규를 준수하고, 과세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칙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외부 전문기관 활용

- 조세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고, 중요한 의사결정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외부 전문기관은 해당 지역 및 국가 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 풀(pool)에서 선정되며, 전문가 현황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④ 투명한 정보 공개

- 포스코DX는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부하고 있는 세금 납부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Governance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olicy

개정이력 | 2024.04.01 개정

###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DX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포스코DX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DX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포스코DX는 포스코DX와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기본 원칙

- 정보보호 국제표준과 국내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기술 및 인력 등 정보자산을 보호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은 스스로 정보보호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개선한다
- 임직원은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킨다.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실행 방안

#### 1 정보보호관리체계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며, 보안사고로부터의 산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한다.
- 보안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절차를 구축 및 운영하고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를 실시한다.
- 주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 모든 임직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상시 관리점검 체계를 수립해 정보 보안의 효과성을 확보한다.

#### 2 개인정보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및 자유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주관부서'는 임직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취급관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의 역할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임원은 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총괄하고 관리체계를 수립 및 관리한다.
- 담당 부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을 개선한다.

#### 4 보고 및 징계

- 임직원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담당 임원 또는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 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징계할 수 있다.

Governance

# 반부패 준수 지침

## Anti-Corruption Compliance Guidelines

개정이력	2011.04.18 제정	2019.12.02 개정
	2016.05.02 개정	2020.01.02 개정
	2016.09.28 개정	2023.03.20 개정
	2018.08.31 개정	

목적

주식회사 포스코DX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이 지침은 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해외법인, 대리인, 거래의 상대방 등이 반부패와 관련된 글로벌 법규와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 절차

① 글로벌 반부패 준수

- ① 포스코DX의 임직원은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글로벌 법규와 스탠더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와 스탠더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i.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법인과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미국 외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회계와 관련하여 정확한 장부 기록과 관리 등 내부통제 필요 사항을 규정한 「FCPA」
  - ii. 영국 기업과 영국에서 사업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영국 외 국가의 공무원,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한 「Bribery Act」
  - iii.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이행 법규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한 「OECD 뇌물방지 협약」
  - iv. 기업이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한 대응을 규정한 「UN Global Compact」
- ③ 포스코DX의 임직원은 글로벌 반부패 법규와 스탠더드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의 반부패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④ 사회적 관행 또는 비즈니스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또는 현지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 ⑤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현지 법규와 회사의 반부패 준수 지침 등이 상충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② 접대 및 편의

- ① 포스코DX의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과 거래 상대방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상 이익을 위한 부정한 의도로 접대나 편의와 관련하여 금전 또는 유가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유가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i. 유가증권, 부동산, 식사, 선물, 골프
  - ii. 교통, 숙박 등의 경비
  - ii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이나 할인
  - iv. 정치 헌금(Political Contribution)
  - v.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③ 제품의 판촉, 계약 체결과 사업 관련 상호 이해 증진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한 접대나 편의는 통상적 수준에서 주고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i. 업무상의 접대나 편의의 수준이 합리적일 것
  - ii. 업무상의 접대나 편의라도 이해관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닐 것
  - iii. 관련 지출 내역은 회사의 장부 등에 정확하게 반영할 것

**업무 절차**

- ④ 포스코DX의 임직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식사, 선물 등을 호의나 예의의 표시로 친목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i. 식사, 선물 등은 상대방의 급여 수준보다 소액일 것
  - ii. 식사, 선물 등은 분명한 명분으로 필요한 시점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하지 않을 것
  - iii. 식사 등 접대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한도를 초과하는 식사나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식사나 선물을 주고 받은 후에는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관련 법률과 사내 윤리 규범에 따른다.
- ⑤ 포스코DX의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i.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받지 말 것. 단,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ii.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촉, 시연이나 설명,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 등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일 것
  - iii. 이해관계자 이외의 가족 등에 대한 편의는 제공하지 말 것
  - iv. 편의 제공에 따른 비용은 이해관계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항공사, 호텔 등 편의 이용처에 직접 지급할 것
- ⑥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의 정도경영그룹에 문의해야 한다.

**③ 비정상 업무추진비**

- ① 비정상 업무추진비(이하. 급행료)는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i. 비자 발급 등 행정 서류의 접수나 처리
  - ii. 제품의 운송 등과 관련된 통관, 선적, 하역
  - iii. 전화 개통, 전기나 수도의 공급
- ② 포스코DX의 임직원은 국내의 공무원에게 모든 급행료를 제공할 수 없다.

**④ 대리인과 합작 투자**

- ① 대리인은 포스코DX를 위하여 사업 수주, 통관, 인허가, 세무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FCPA 등 글로벌 반부패 법규와 스탠더드에서는 대리인이 국내의 공무원,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의도로 금전 또는 유가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FCPA 등 글로벌 반부패 법규와 스탠더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계약 체결 체크리스트에 따라 대리인과의 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 i. 대리인이 뇌물 수수 등과 관련하여 전력이 있거나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의 과거나 현재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 여부
  - ii. 공무원에 의한 대리인 추천, 공무원의 지분 보유 등 대리인과 전·현직 공무원 간 관련 여부
  - iii. 선금금 지급, 제삼자를 경유한 지급 등 대리인의 복잡한 지급 방법의 요구
  - iv. 대리인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불안정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 ③ 대리인과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i. 대리인의 글로벌 반부패 법규와 스탠더드 준수에 대한 역할과 책임
  - ii. 대리인의 보수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
  - iii. 대리인이 글로벌 반부패 법규와 스탠더드를 위반할 경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iv. 대리인이 글로벌 반부패 법규와 스탠더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
- ④ 포스코DX의 임직원은 대리인과 계약 체결 후 글로벌 반부패 법규와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대리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정도경영그룹으로 통보하여 포스코DX가 이를 시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⑤ 대리인을 통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글로벌 반부패 법규와 스탠더드의 위반이 우려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정도경영그룹으로 문의해야 한다.
- ⑥ FCPA 등 글로벌 반부패 법규와 스탠더드에서는 합작 투자사와 합작투자 파트너사가 국내의 공무원, 거래상대방 등 이해 관계자에게 부정한 의도로 금전이나 유가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합작 투자비즈니스 경우에도 대리인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⑦ 공급사, 고객사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반부패 준수 지침을 상호 간의 양해를 통해 준용할 수 있다.

## 업무 절차

### 5 회계 기록과 관리

- ① 글로벌 반부패 법규와 스탠더드에서는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내부회계 관리체계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스코DX의 임직원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청구서, 영수증과 기타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적정하게 회계 처리해야 하며,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이나 자산의 보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 ② 장부와 기록의 유지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포스코DX의 내부회계 관리 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i. 모든 거래의 비용은 적절한 결재권자의 결재에 따라 집행할 것
  - ii. 모든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후 적절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을 것
  - iii. 자산은 적절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 것
  - iv. 자산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 6 반부패 준수 교육

- ① 포스코DX와 출자사 임직원은 정도경영그룹의 안내에 따라 반부패 준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정도경영그룹에 제출해야 한다.

### 7 신고와 내부 고발자 보호

- ① 포스코DX의 임직원은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와 포스코DX의 반부패 준수 지침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해야 한다.
- ② 포스코DX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자의 신분 누설,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나 색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신고자에게 고용 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 8 보상과 처벌

- ① 포스코DX는 포스코DX의 반부패 준수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상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스코DX는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포스코DX의 「반부패 준수 지침」을 위반하는 임직원에게 「취업 규칙」과 「인사 규정」의 상벌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③ 포스코DX의 임직원이 글로벌 반부패 법규나 스탠더드를 위반해서 민형사상 처벌로 벌금 등을 부과받는 경우 포스코DX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전 책임도 없다.

Governance

# 윤리규범

## Code of Ethics

개정이력	2010.02.20 제정	2015.11.05 개정	2018.02.06 개정	2019.12.02 개정
	2011.04.18 개정	2016.09.28 개정	2018.06.08 개정	2023.03.20 개정
	2012.09.01 개정	2017.06.01 개정	2018.08.31 개정	2023.03.31 개정
	2014.06.02 개정	2017.08.01 개정	2019.03.14 개정	

### 제1장 CEO 메시지

주식회사 포스코DX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윤리 실천을 통해 전 임직원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공유하고 윤리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지속성장가능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진실(Integrity)과 공정(Fairness)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신뢰(Trust)라는 가치는 지금의 주식회사 포스코DX를 있게 한 최고의 자산이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주식회사 포스코DX를 지탱하고 미래를 열어갈 최고의 가치 기준입니다.

오늘날 기업의 윤리성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한 기업의 윤리경영의 수준은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가치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포스코DX가 진정한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랜 전통으로 이어온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에 두고 CEO로서 이를 위해 필요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경영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그리고 성윤리 위반 등 4대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갈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윤리와 이익이 상충될 때는 이익보다는 윤리를 택하는 것이 주식회사 포스코DX의 경영철학을 명심하고 윤리를 항상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윤리적 기업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고객이 가장 거래하고 싶은 기업, 주주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하고 발전하는 주식회사 포스코DX를 만들어 나갑시다.

2023. 03  
사장 정덕균

**제2장  
윤리 현장**

**① 전문**

이 윤리규범은 희생과 봉사를 근간으로 하는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창업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여 포스코그룹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이다.

진실(Integrity), 공정(Fairness), 정직(Honesty)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Trust) 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이다.

이에 포스코DX는 2003년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하였고, 2014년에는 인간존중을 표방하는 유엔 인권경영을 윤리규범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금번에는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영혁신의 취지에 맞게 윤리기준을 강화한 윤리규범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 윤리규범은 전문(前文)에 이어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와 책임을 반영한 윤리경영 원칙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인 실천지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스코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윤리규범이 정한 윤리원칙과 실천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것이 선열의 피와 창업세대의 땀으로 이룬 주식회사 포스코DX를 현재의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지켜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② 윤리 원칙**

**②-① 윤리규범 준수 의무**

- ① 주식회사 포스코DX가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주식회사 포스코DX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 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
- ④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②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 ①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윤리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나 정도경영그룹과 상담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비윤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③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서장이나 정도경영그룹에 즉시 신고하거나 상담해야 한다.

**②-③ 리더의 역할과 책임**

- ① 리더는 윤리준수를 통해 비윤리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회사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
- ② 의사결정은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 ③ 경영책임은 비윤리 행위 발생 시 무한 책임을 지고, 부하 직원이 비윤리 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리 책임을 진다.
- ④ 업무 수행은 철저히 법과 사규를 지키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기업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부정부패한 이해관계자와 거래하지 않는다.
- ⑤ 청탁 배제는 모든 청탁을 근절하고 외부인과 연계한 업무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
- ⑥ 인간 존중은 조직 내 성희롱과 폭언 등 인간존중을 저해하는 행위근절에 노력한다.
- ⑦ 이해 충돌 방지는 거래 관계사에 재직 중인 사적 이해관계자와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사적 이해 관계를 이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의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 ⑧ 실천 활동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명시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윤리 실천 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
- ⑨ 리더는 소속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예방하고 비윤리 행위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소속직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소속직원에게 전파
  - 2.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비윤리 행위가 있을 경우 원인을 발굴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정도경영그룹에 신고 또는 상담

**②-④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 ①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한다.
  - i.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
  - ii.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 iii.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도경영그룹 조사에 비협조
  - iv.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 제3장 일반 사항

### ① 윤리규범의 준수

- ①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② 윤리규범의 제반 관리 업무는 정도경영그룹으로 하고, 세부 운영은 분야별 관리책임 부서에서 한다.
- ③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임원과 부서장의 책임

- ① 임원과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이 규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 ② 임원과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이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신고 의무 및 비밀 보장

- ①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해야 한다.
- ② 임원과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해야 한다.
- ③ 정도경영그룹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④ 임직원은 보고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⑤ 보고자나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 ⑥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⑦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나 보상에 대한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 ④ 포상과 징계

- ① 회사는 윤리규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 ③ 회사는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회사 출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윤리위원회 운영

- ① 회사는 윤리관련 중요 안건의 보고, 심의, 의결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기준은 따로 정한다.

### ⑥ 해석

- ①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② 윤리규범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정도경영그룹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 ⑦ 개정

- ① 정도경영그룹은 필요한 경우 윤리규범을 개정하되 상임감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한다.

**제4장  
실천지침**

**① 세부 실천 지침**

**①-① 금품**

- ① 금품은 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②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i.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 단, 농수산물·가공품(화훼를 포함한다)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한다.
  - ii.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이나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 ③ 해외출장 시 해외 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④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상 지식, 직책 등을 이용하여 사외 출장으로 수익(강사료 등)을 얻는 경우에는 수익의 50%를 기탁하여야 한다.

**①-② 접대**

- ① 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 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 ② 이해관계자와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단,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불가피하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해야 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와 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④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 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①-③ 편의**

- ① 편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 ②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단,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③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해야 한다.

**①-④ 경조금**

- ①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 행위로 간주한다.
- ② 직원 간의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판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 메일이나 청첩장, 부고장과 같은 안내장 발송 등에 의한 안내를 금한다.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 ③ 임직원간 경조금은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권장한다.
- ④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환이나 조화를 포함하여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이나 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반환하거나 정도경영그룹에 기탁해야 한다.
- ⑥ 임직원은 정도경영그룹이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의 반환 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⑦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 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 된다.
- ⑧ 임직원은 특급호텔 등에서 사치성 혼례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①-⑤ 청탁과 추천**

- ①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청탁이나 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청탁과 추천 등록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i. 설비나 자재 구매와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ii. 채용, 승진, 상벌, 보직 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나 특혜 요청
  - iii.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나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iv. 점검과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② 청탁 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실천지침**

**1-6 금전 거래**

- ① 이해관계자와 금전 대차, 대출 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해야 한다.

**1-7 행사 찬조**

- ① 부서 단위 행사나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②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불가피하게 행사 찬조를 받은 경우 정도경영그룹에 신고해야 한다.

**1-8 예산 재원의 부당한 사용**

- ①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1-9 정보와 자산의 보호**

- ①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 ②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③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④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1-10 공정거래**

- ① 국제기준과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 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 회사에게 하지 않는다.
- ③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④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한다.

**1-11 이해충돌 방지**

- ① 이해충돌이란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
- ②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요청사항은 철저히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 ③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의도하지 않은 접촉 시 부서 상급자 또는 정도경영그룹 윤리 책임관에게 보고한다.
- ④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 임직원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 ⑤ 퇴직 임직원 모임은 퇴임 후에 가입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탈퇴한다.
- ⑥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서 상급자 또는 윤리 책임관과 상담 후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정 등의 조치에 동의한다.
- ⑦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을 우대하여 부당한 수익계약 체결, 고가 구매, 물량 몰아주기,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 ⑧ 퇴직 후에도 주식회사 포스코DX와 포스코 그룹사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2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

**2-1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조성한다.
- ② 임직원의 생활 여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③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2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

- 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제도를 마련한다.
- ②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량 향상과 자기 개발 교육을 지원한다.

**2-3 공정한 평가와 보상**

- ①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장  
실천지침

2-4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① 임직원은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 ② 임직원은 조직 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3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 확보

3-1 고객만족 실현

- ①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을 이해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
- ②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3-2 고객가치 창출

- 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다.
- ② 임직원은 국내외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한다.

3-3 고객신뢰 확보

- ① 경영 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②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한다.
- ③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4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4-1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

- ①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동시에 증대한다.

4-2 투자 정보의 공정한 제공

- 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투자자에만 제공하거나,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4-3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 및 제공

- ① 재무 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
- ②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보고서를 작성한다.
- ③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5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5-1 상호신뢰 구축

- 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②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 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거래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 ④ 거래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5-2 거래회사와의 동반 성장 추진

- ①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 ②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거래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5-3 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 지원

- ① 거래회사에 대한 기술과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한다.
- ②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 성장 거래회사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제4장  
실천지침**

**6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6-1 기업시민으로서 역할과 자세**

- ① 현지 국가의 법령과 규정, 지역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 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국가와 사회와 관련이 있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거래회사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6-2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 ① 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의무를 다한다.
- ②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각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전개한다.
- ③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

**7-1 환경경영체계 구축**

- ①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 소통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수행한다.
- ② 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한다.
-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또는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 ④ 환경보호가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사실에 대해 거래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⑤ 거래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7-2 환경법령 준수와 환경영향 개선**

- ① 환경 법령을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7-3 기후 변화 대응**

- ① 화석 연료 또는 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7-4 생태계 보전**

- ①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8 인권의 보호와 존중**

**8-1 인권의 보호와 존중**

- ①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국제 기준을 지지하며 자유, 안전,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한다.

**8-2 인권관련 국제 기준의 존중**

- ① 세계인권선언, UN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UN글로벌 콤팩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② 명확한 인권보호 정책과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거래회사가 인권관련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인권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8-3 인권존중을 위한 실사 의무**

- ① 인권존중을 위한 실사(Due Diligence)의무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 ② 실사 결과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 ③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한다.

## 제4장 실천지침

### 8-4 임직원의 보호

- 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③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④ 미성년자의 노동 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⑤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8-5 존중과 평등

- ①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괴롭히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②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
- ③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 8-6 적법하고 인간적인 고용조건 보장

- ① 임직원이 제기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②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시간 유지 등 고용 조건을 보장한다.
- ③ 회사의 경영 활동은 지역사회와 인권 존중 노력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posco  
포스코DX